

강원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2회 정례회(6. 2. ~ 6. 18.)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2회 정례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조례안 : 9건(도지사 3, 의원 6) *제안자 구분

위원회	의안명(조례안)	제안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0. 6. 18.)
기획행정 위원회 (2)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수정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	수정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중 의원	원안
경제건설 위원회 (3)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수정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원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제292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6. 23.(화)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2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강원도를 말한다. 조례안은 대행기관장인 강원도지사가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선 의원

허소영 의원

권순성 의원

안미모 의원

김규호 의원

▣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4)
- 공동발의: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의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기 위한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이를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라 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상규 의원

주대하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 공동발의: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외 17인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은 강원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과학, 봉사 협력 부문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등의 추천을 통해 시상하고 있다.

▣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양)
- 공동발의: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김진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2),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강원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중 의원

권순성 의원

김진석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미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의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하며, 소속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하여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조례는 강원도지사가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전염병 및 감염증 확산, 자연·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도지사는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삼척1)
- 공동발의: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형원 의원



정유선 의원



안미모 의원



주대하 의원